



제 429 회 국 회 (정 기 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 〉

■ 이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092호)

2025.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 문 위 원 김 용 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기현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5. 9. 18.
3. 회 부 일: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책임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요구를 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하거나 재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9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바, 조치요구 등을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대한축구협회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와 운영,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추진 과정 등 협회의 행정 운영 전반에서 위법사항을 지적받으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축구협회장 등 이에 책임이 있는 협회의 주요인사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받았

으나 축구협회는 이에 따르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해당 규정들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징계요구에 대한 조치요구 기간을 현재 9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단축하고, 보완요구 기간도 기존 9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며, 현재 재정지원 제한 이외에도 해당 단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해당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9제2항·제3항 및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체육단체에 대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기간 단축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조치요구를 받고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있음 (안 제18조의9제2항).
- 개정안은 체육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보완요구를 받고 보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있음 (안 제18조의9제3항).
- 개정안은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를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55조제1항제1호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생략)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② ----- ----- ----- -----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0일

③

-30일

④ ~ ⑬ (생략)	④ ~ ⑬ (현행과 같음)
제5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5조(과태료) ① ----- ----- -----.
<신설>	1. 제18조의9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 재조치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1.·2. (생략)	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는 다음과 같음¹⁾.

- 1)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①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상담 및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 결과 발견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하여 체육단체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징계요구 또는 권고, 시정명령 등(이하 “조치요구”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조치요구를 받은 체육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어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이하 “보완요구”라 한다)하거나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이하 “재조치요구”라 한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과와 회의록 등 근거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결과에 대한 재조치요구(이하 “재징계요구”라 한다)는 그 결과가 징계요구 사유에 비추어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제도 현황]

구분	내용	보고 기한	단서
조치 요구	문체부장관이 체육단체에 위법·부당행위(비리, 인권침해 등) 발견 시, 해당 단체에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징계·권고·시정명령 등 "조치요구"를 할 수 있음	90일 이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연장 가능,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함
보완· 재조 치요 구	체육단체가 조치결과를 보고하면, 장관은 필요시 추가 보완 또는 다시 조치할 것을 요구("보완요구" 또는 "재조치요구")	9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반드시 이행, 재징계요구는 현저히 가볍거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로 한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이러한 조치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음²⁾.

○ 그러나 일부 체육단체에서 징계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관련 제도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에 대한 보고기간을 단축하고, 미이행 단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2)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고발 및 징계요구 등) ⑪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조치요구 등(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체육단체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에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⑫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체육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제한하도록 통보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개정안은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타당성이 있음.

- 유사한 사례로 「공무원 징계령」에서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³⁾.

○ 스포츠비리나 체육계 인권침해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치요구와 보완요구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한을 고려하여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처리기한 단축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다수의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징계위원회⁴⁾와 달리 체육단체의 직원수는 시·도 체육회는 약 7~8명, 시·군·구 체육회는 약 1~2명으로 징계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3) 「공무원 징계령」 제9조(징계의결등의 기한)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 이내에 징계의결등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는 60일)의 범위에 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징계의결등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등 절차의 진행이 법 제83조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등의 기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공무원 징계령」 제4조(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 또한, 체육단체의 징계 사건 처리 절차는 통상 2~3개월이 소요되며⁵⁾, 실제 조치요구 등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현 기한인 90일 기준 기한이 도래한 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건수 중 기한 내 회신 된 경우는 12.3%(18건)에 불과함.

[체육단체의 조치요구 등의 회신 현황]

(‘24.8.7.~‘25.8.31.)

‘24.8.7. 이후(신설된 법적 기한(90일) 적용)				
합계	기한 내 회신	기한 후 회신	기한 도과 미회신	기한 미도래
225건	18건	75건	53건	79건

* 기한 도래한 146건 중 △기한 내 회신 12.3%(18건), △기한 후 회신 51.4%(75건), △기한 도과 미회신 36.3%(53건)

* 기한 내 회신(18건)의 평균 회신 기간 : 72일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한을 단축할 필요는 있으나, 과도하게 처리기간을 단축할 경우 절차상 하자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는바, 합리적인 기간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조치요구의 처리기한을 60일로 단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징계 관련 전담 조직이 없는 시·도 이하 체육회의 경우 처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시킬 경우 업무 부담 가중이 우려되는바, 재조치요구 및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도 6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⁶⁾.

5) 체육단체 징계사건 처리 절차: ① 사건 접수 및 사실관계 조사(증거 수집, 관계자 면담, 자료 확보 등)(2~4주) → ② 조사보고서 작성 및 징계요구 검토(법률 및 관련 규정 검토)(1~2주) → ③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1~2주) → ④ 징계위원회 심의·의결(1일) → ⑤ 징계결과 통보 및 재심 청구 기간 부여(1~2주) → ⑥ 징계결과 보고(1~2주)

-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체육계의 인권침해와 불공정 사건의 처리 지연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대한체육회 등은 이미 재정지원 제한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 추가 부과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부분의 체육단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75

6) 대한체육회, 근대5종연맹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함.